

[별표 6의2]<신설 1982.7.12, 1982.12.30>

해상관광호텔업시설기준(제15조관련)

1. 이용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해상구조물 또는 선박을 해상에 고정시키거나 계류시킬 것.
2.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육지와 호텔간을 연결하는 가교를 설치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이 있을 것.
3. 호텔이용객을 위하여 근접해안까지 차량출입이 편리한 진입로가 있을 것.
4. 해안부근에 주차시설이 있을 것.
5. 50실이상의 객실과 현관로비가 있을 것.
6. 3등급관광호텔이상의 설비를 갖춘 객실이 총객실수의 2분의 1이상일 것.
7. 객실 이외의 시설은 별표 4에 정한 3등급관광호텔이상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8. 객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좌변수세식변기를 설치한 화장실과 욕조·샤워·세면대 및 거울을 갖추고, 사용할 때마다 냉온수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급수설비를 한 공중목욕탕을 갖추고 있을 것.
9.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다음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가. 오수처리시설(분쇄시설 및 소독시설을 포함한다)
 - 나. 오수저장시설
 - 다. 폐기물소각시설
 - 라. 선저폐수를 발생시키는 해상관광호텔에 있어서는 유수분리장치 및 기름배출 감시제어 시스템시설